

심 사 보 고 서

○ 충청북도 청남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

충청북도의회
행정문화위원회

충청북도청남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

의안 번호	279
----------	-----

2015. 12. 21.(월)
행정문화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자 : 충청북도지사

나. 제출일자 : 2015년 10월 30일

다. 회부일자 : 2015년 11월 4일

라. 상정일자 : 2015년 12월 15일

- 제344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6차 행정문화위원회 : 상정·의결

마. 주요내용

-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답변, 심사의결(원안가결)

2. 제안 설명 요지

(제안설명자 : 문화체육관광국장 신찬인)

가. 제안사유

○ 충북도민대상 수상자 및 명예도민에게 청남대 입장료 면제혜택 조항을 신설하고, 청남대 체험·연수시설의 시설 사용료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청남대 운영을 원활하게 하고자 함

나. 주요내용

○ 충북도민대상 수상자 및 명예도민의 입장료 면제(안 제4조제10항)

○ 본관 내부촬영 기본료 조정, 강당·세미나실 등 사용료 조정(안 별표3)

3. 검토보고 요지

- 금번 개정조례안은 충청도민대상 수상자 및 명예도민이 충청북도에서 운영 중인 청남대에 입장할 경우 입장료 면제혜택을 부여하여 예우하고, 청남대 시설사용료를 1일 단위로 부과하였던 것을 시간단위로 부과하여 보다 많은 이용자가 시설을 사용할 수 있도록 조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음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“생략”

5. 토 론 요 지 : “생략”

6. 심 사 결 과 : “원안가결”

7. 소 수 의 견 요 지 : “없음”

8. 기타 필요한 사항 : “없음”

9. 심사보고서 첨부서류

- 「충청북도청남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

의안번호	제 279 호
의 결 연 월 일	2015년 월 일 (제 회)

충청북도청남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제 출 자	충 청 북 도 지 사
제출연월일	2015년 10월 30일

법무통계담당관 심사를 마침

충청북도청남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279
----------	-----

제출연월일 : 2015년 10월 30일

제출자 : 충청북도지사

1. 제안사유

- 충북도민대상 수상자 및 명예도민의 입장료 면제로 충청북도 및 청남대 이미지 제고
- 체험·연수시설의 사용 증가에 따른 시설 사용료 조정

2. 주요내용

- 충북도민대상 수상자 및 명예도민의 입장료 면제(안 제4조제10항)
- 본관 내부촬영 기본료 조정, 강당·세미나실 등 사용료 조정(안 별표3)

3. 의안전문 : 붙임

4. 신·구조문 대비표 : 붙임

5. 관계법령 발취 : 붙임

6. 비용추계서 : 해당없음

충청북도조례 제 호

충청북도청남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청남대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2항제10호를 제11호로 하고, 같은 항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0. 충북도민대상 수상자 및 명예도민

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표 3]

청남대 시설 사용료(제8조제1항 관련)

(단위 : 원)

시설명 및 사용구분	장소	사용료	비 고
본관 내부촬영	1층 2층	500,000/5시간	· 드라마, 영화, 광고(CF) 촬영 ※ 내부촬영 후 외부촬영은 별도 사용료 없음
외부촬영	청남대 내	100,000/1시간	· 드라마, 영화, 광고(CF) 촬영
기획전시관	대통령기념관 (별관)	50,000/일	냉 · 난방비 별도
세미나실		30,000	
회의실		1회/2시간 20,000	
이벤트실		1회/2시간	
강당		50,000/2시간	
웨딩 촬영		청남대 내	
야외 결혼식장	헬기장		하객 1인당 단체입장료에 준한 사용료 징수
대통령기념관 세미나실	대통령기념관	500,000/일	냉 · 난방비, 세탁비 별도

※ 야간 사용료는 100% 할증

■ 냉 · 난방비 기준

- 세미나실(1회 1시간 기준) : 난방비 40,000원, 냉방비 30,000원

■ 가산금 적용 : 1시간 초과 시마다 기준요금의 20% 가산

■ 시설 사용료는 위 기재된 금액을 원칙으로 하되, 그 밖에 명기되지 아니한 시설 사용료는 상호협약에 따른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4조(입장료) ① (생 략)</p> <p>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장료를 면제한다.</p> <p>1. ~ 9. (생 략)</p> <p><u><신 설></u></p> <p>10. (생 략)</p>	<p>제4조(입장료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----- ---</p> <p>1. ~ 9. (현행과 같음)</p> <p><u>10. 충북도민대상 수상자 및 명예도민</u></p> <p>11. (현행 제10호와 같음)</p>

관련법령 발취

□ 충청북도 도민대상 조례 시행규칙

제10조(예우) ① 조례 제10조의2 규정에 따라 도지사는 도민대상 수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.

1. 충청북도 주관 각종 행사의 초청·관람 등 귀빈으로 예우
2. 충청북도 설치·운영("위탁시설"을 포함한다) 시설물 입장료, 주차요금 감면 등
3. 도민대상 수상자의 신분증 등 제작·배부
4. 그 밖에 도민대상 수상자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② 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른 신분증은 별표 3과 같이 제작하여 수여한다.

□ 충청북도 명예도민증서 수여조례

제7조(권리의무)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서를 받은 자가 원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에 의한 권리행사 및 의무분담을 할 수 있다.

1. 도유 및 시·군유재산과 공공시설의 무료(감면)이용 또는 우선이용
2. 도, 시·군으로부터 균등하게 각종행정의 혜택을 받을 권리
3. 기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도, 시·군의 비용을 분담하는 의무